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정(안) 입안예고

산업자원부 자료제공
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9조의2(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 등) 및 「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」가 제정됐다. 본 고에서는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살펴본다.

- 편집자 주 -

1. 제정 이유

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어린이보호포장 :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품를 꺼내기 어렵게 설계 · 고안된 포장(용기를 포함한다.)

2.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 고시(안) : 〔표 1〕 참조

3. 의견 제출

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이번 달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에 제출하면 된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※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락처

- 주소 : 우 427-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- 전화번호 : (02)509-7246~50 FAX : (02)509-7224 ko

〔표 1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구체적인 범위고시(안)

공산품명	구체적인 범위
1. 방향제	1.1. 건물의 실내, 자동차 내부 등 일정한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생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1.2.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. 알코올 4%(w/w) 이상 나. 탄화수소 화합물 10%(w/w) 이상 1.3.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. 가. 에멀젼 형태의 것 나.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.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의 것 라. 동점도 19.8~24.2 Cst(40℃) (Saybolt 점도 105(100℉)) 이상의 것
2. 세정제	2.1. 세정 · 세척(깨끗이 닦는 것)의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가. 배수관용 나. 배수구용 다. 욕조용 라. 타일용 마. 유리용 바. 바닥용 사. 변기용 아. 자동차용 자. 가전제품용 차. 주방용 카. 염소계 표백제로 세탁용 파. 합성세제로 세탁용 하. 기타 세정 · 세척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2.2.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. 수산화나트륨 · 수산화칼륨 또는 하이포(차아)염소산염 2%(w/w) 이상 나. 황산 5%(w/w) 이상 다. 터펜유 10%(w/w) 이상 라. 벤젠 · 톨루엔 · 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%(w/w) 이상 마. 메틸알코올 또는 에틸알코올 4%(w/w) 이상 바. 탄화수소 화합물 10%(w/w) 이상

〔표 1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구체적인 범위고시(안)

공산품명	구체적인 범위
2. 세정제	2.3. 분말 · 알갱이 또는 플레이크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10%(w/w) 이상의 것 2.4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. 가. 에멀젼 형태의 것 나.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.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의 것 라. 동점도 19.8~24.2 Cst(40℃) 〔Saybolt 점도 105(100℉)〕 이상의 것
3. 접착제	3.1. 물체의 표면을 접착(접촉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)시키는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3.2.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순간접착제로 메타크릴산 5%(w/w)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
4. 얼룩제거제	4.1. 접착제 · 껌 · 테이프 · 녹물 · 찌든 때 등 얼룩 제거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4.2.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. 아세토니트릴 500mg 이상 나. 황산 5%(w/w) 이상
5. 광택제	5.1. 가구 · 자동차 등 물체에 광택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5.2. 액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가. 터펜유 10%(w/w) 이상 나. 벤젠 · 톨루엔 · 크실렌 또는 석유정제물 10%(w/w) 이상 다. 탄화수소 화합물 10%(w/w) 이상 5.3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것은 제외한다. 가. 에멀젼 형태의 것 나. 압축가스로 충전된 분무용기의 것 다. 별도로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되어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의 것 라. 동점도 19.8~24.2 Cst (40℃) 〔Saybolt 점도 105(100℉)〕 이상의 것
6. 부동액	6.1. 자동차 냉각수의 동결방지 및 냉각기구의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6.2. 액상의 형태로 에틸렌글리콜 10%(w/w)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
7.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	7.1.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세정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보관 · 사용하는 것 7.2. 액상의 형태로 메틸알코올 4%(w/w)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